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에 앞서

최 창 규

近者 國家技術資格法의 通過와 아울러 그 施行令이 草案되고 곧 公布를 앞두고 建築人으로서 이에따른 直接, 間接으로 일어날 問題點들을 생각해보았다.

人類는 長久한 历史를 걸어오면서 수많은 法을 制定했고 改造했고, 廢棄했고 또 新規制定 해왔다. 制定이든 改造든 廢棄든 間에 다 目的과 必要와 大義明分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將次도 亦是 이 러한 일이 되풀이 될 것은 틀림없다. 如何間 그 理由야 制定當時의 소홀이였든 行政의 便利였든, 그 國家의 政治理念이 變質되었든 또는 그 國民의 倫理나 道德率이 變遷되었든, 政權의 政治的 維持目的이였든 間에 그 理由들은 몹시 多樣했다.

오늘날 우린 封建的社會와는 달리 國際社會에 살고 있고 이 國際社會에서 孤立되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事實인데 이 國際社會엔 수많은 國家들이 있고 그들은 그 國家나 民族나름대로 平和나 自由이니 繁榮을 생각하고 研究하고 그 目標를 向해 努力하고 前進하고 있으나 格差가 있는 것도 事實이다. 自己의 位置를 認識하고 自己의 能力を 認知하고서 이 國際社會의 淾中에서 処身해나가야만 하겠는데 強大國도 그렇다고 先進國도 못 되는 우리는 겨우 開發途上國이란 位置에서 한格 더 높이 올라갈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이때 先進國이란, 強大國이란 機械文明과 科學文明이 發達된 것을 말하는데 機械와 科學은 研究와 技術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은즉, 우리나라도 技術이란 点에 重點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今般의 國家技術資格法이 制定된 動機가 되겠고 技術人力의 管理統制라는 行政的理由와 아울러 國家重化學工業振興에

對備한 技術人力의 受給計劃이 必然的으로 따라야 하므로 모一tron 技術에 關係되는 分野를 統轄 해서 母法에 包含시키고 이제 施行令으로서 그 資格을 定하고 受給에 要求되는 予定人員을 限界치를 作定인 것 같다.

이 母法엔 機械金屬, 化工電氣, 電子, 通信, 造船, 航空, 土木, 建築, 鉱業 其他產業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技術部分의 資格을 規定하자는 것으로서 大部分이 建設파 많은 關係가 있는 技術系列로 되어있다. 여기서 他部門은 別途로 하고라도 建築部門엔 建築士法이 있고 既得의 國家 考試로서 1, 2級의 免許를 取得해서 地方長官의 事務室開設許可를 얻어서 建築設計에 從事하고 있는 建築士들의 境遇, 全國에 3千이 넘는 우리 建築士들은 國家나 社會에서 要求되는 거의 모두가 建築設計를 消化시키고 있는 事實인데 여기에 어떤 不便이나 支障이 있어선지 또는 이 部門의 人力受給이나 統轄에 어떤 隘路가 있는 것인지?

이번 國家技術資格法엔 建築士(建築設計創作)가지도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解釋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理解가 가지 않는다.

萬一 建築士도 이 技術資格法에 該當되어서 既得의 免許나 資格이나 對偶가 無効로 돌아 간다고 하면 國内外로 많은 問題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이에 附隨的理由로 連鎖 副作用이 일어날 것은 틀림 없다.

“첫째” 3千名의 建築士는 무엇이 되는가?

1級은 当場이라도 受驗한다 하더라도 갖事務室을 開設한 2級 建築士들은 年限(受驗)이 不足하니 몇年을 더 기다려야 受驗할 수 있으니 그동안은 어찌 할 것인가?

“둘째”로는 韓國에 선 法으로 建築設計가 技術이라고 規定되고 藝術面은 없는 것으로 規定 지어질 것이다. 이러면 U.I.A. 加入團體인 韓國建築家協會는 國內로서는 藝總을 脫退해야겠고 國外로는 U.I.A. 서도 물려나야만 하게 된다. 5,16 后政府는 國際機構에 加入할 것을 勸獎했고 再昨年엔 北傀가 韓國을 떤 理由를 얹지로 불여서 脱退시킬려고 劇策했을 때, 政府는 얼마나 이를 阻止하기에 努力했든가.

이렇게 되면 國際的으로 國家体面은 어찌 될 것인지.

“셋째”各大學 建築科의 學制나 教科內容을 變更시켜서 學生들에게 計算이나 또는 工學技術面에 置重해서 가르치고, 아예 位相的인 空間問題나 計劃이나 意匠, 또는 表現等은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들이 技術資格을 取得해서 建築設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各部處間에서는 사소한 일이지만 若干의 機構變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섯째”家協會가 U.I.A 를 脱退했을 땐, 우린 國際建築懸賞設計에 應募할 資格을喪失케되니永遠히 國際交流나 國際建築界에 參與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建築設計가 技術資格法에 包含된다면 여려 가지 웃지못할 問題가 일어나게 될 것은 틀림없는 事実이고 보면, 本人은 「建築士」74' 5月号에 “建築家의 辭”에서도 強調한 바와 같이 建築이란 人類의 历史나 文化를 證明해 주는 有一無二의 造型藝術인데 그 性格의一部分에 技術의面이 있다해서 技術로서 規定지어 버릴 수는 없는것이 되고, 世界의 많은 나라中에서 우리보다도 後進國이라 할지라도 建築을 技術로서 둑어 버린나라는 아직 것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 稅法에서 建築設計는 庶業으로 되어있고, 營業鑑札等도 없는 訴謂 Service業인데 映画俳優나 歌手에게 資格과 級數를 붙이고, 藝術家들에게 等級을 붙이고 統制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름지기 軍隊에 關한 法이나 國家保安에 關한 法等 特別한 秘密이 要求되는 法이라면 몰라도, 이런 法의 母法이 通過되고 施行令이 草案되고, 近日内에 公布된다는데 該當對象인 建築人們도 잘모

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理由야 어찌되었든, 納得이 안가는 것이다. 立法이란 그렇게 短時間內에 淫速으로 할수 있는 것일까?

該當界의 意見이나 或은 公廳會等을 가져서 周到하게 다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인가? 建築이 무엇인지 모르는 立法關係者들로서는 統轄의 便利나 行政의 便利만을 考慮하고, 公布后에 또는 그에 附帶되는 問題들을 研究檢討한 다음 慎重에 慎重을 期해야만 할 줄 안다. 或者는 말한다. 이 法의立案엔 斯界의 大家나 權威者들의(小數) 諮問을 받았다고 하나 果然 그 小數의 大家나 權威者들이란 建築界의 全體란立場과 國家의 將來라는 觀點에서 意見을 말했겠지만 그들亦是 人間이기에, 小數이기에 自己의 位置나 立地條件이 為主가 된 主觀으로서 였다고 보면, 嘿! 建築三團體가 있는데 建築人全體의 集中된 全般意見을 들어서는 안될까? 이 團體는 學術이건 行政實務이건, 藝術이건 間에 建築이 지니고 있는 多樣한 性格을 分擔해서 研究實踐하는 建築人們의(多數) 團體이고 法으로도 다 認定해 놓고 小數의 權威者(?) 들에게만 意見을 듣는다면 結局은 그 小數의 大家들도 三團體中 어느 團體에 屬해 있으니, 그 所屬團體 내에도 亀裂이 가게 되고 나쁘게 말해서 離間策이 되는 것이고 建築界內部에도 混亂이 일것은 自明한 일이 되는 故로 그 小數도 包含한 三團體의 意見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個人으로서의 意見과 團體라는 背景을 가지고서의 同一人의 意見도 달라진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일이 아닌가.

本人은 再昨年 家協會長 在任時 쓰라린 經驗을 갖고 있다. 文化藝術振興法이 公布되기前 建築이란 單字의 字句插入을 為해 月余間을 與·野 國會議員과 要路를 尋訪하면서 建築의 历史, 性格, 藝術性, 韓國建築界의 立場等을 說明하고 文化·藝術振興法中 美術에 包含되어있는 建築을 獨立시킬려고 무진 애를 써 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말이 높다고 하고 그대로 字句를 넣어 獨立시킨다고 하기에 安心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法이 國會에서 通過되는 날 國會의 傍廳席에서 놀랄수 밖에 없었다. 字句고 뛰고가 없고, 그냥 体育法인가와 한꺼번에 무더기로 小委서 再討論하기로 한 것 조차 省略하고 通過되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일이 있다. 即今 이 技術資格法 施行令 公布

를 앞에 두고 建築界의 뜨거운 鎮痛을 볼 때 새삼
三年前의 나의 슬픈 記憶이 되살아남을 어찌하랴.

不偶하게도 建築人們은 軍人같이 뚜렷하게 愛國
愛族한 일이 없다. 바로 建築人們이 韓國의 建築
界를 為해個人의 立場이나 利權을 떠나 眞摯한
建築의 將來를 為해 이려한 問題에 積極參與하고
進言하고 그리고 自己들의 할 바 建築을 研究하고
誠實히 創作에 努力하는 것이 바로 愛國愛族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 法이 原案대로 通過公布된다면 既存 建築士
法이나 稅法이나 文化藝術振興法이나 關連되는 法
들이 많다. 이때 果然 그 法들은 어찌되며, (勿論
新法이 旣法보다 優位란 原則도 있지만 그리 簡單
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우린 經濟企劃院이나 科
學技術處가 計劃하고 있는 技術人員 受給 計劃의
人員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3千名의 建築
士가 어느 程度 技術士法에 選定되어 國家 計劃에
參與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參與못하는 建築士
들의前途는 어찌 될 것인지는 現在狀態로 보아선
아무도 모른다. 모르기에 안타까운 것이다. 솔직
히 말해서 우린 이 立法의 立法趣旨나 動機나
目的에 對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

기에 疑心도 가고, 不信도 가고, 反發도 나오는 것
이다. 이 모른다는 責任이 果然 우리들에게 있는
것일까? 果然 建築設計란 技術일까? 技術뿐으
로 될수 있을까?

이런 疑問은 우리 뿐만 아니라 바로 立法關係當
事者들의 머리속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안다. 아니
꼭 이런 疑問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確信하는 것인
다. 우린 8年前 建築士法이 公布될 때도 建築界
내에서도 意見이 區區했다. 建築人이라면 그때를
回想해보면 다들 記憶이 날 것이다. 어쩌면 이번
도 그때와 꽤 같은 狀況에 있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自業自得이 아니겠는
가. 누구를 탓할 것도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는
것이 된다.

問題는 우리自身들의 實力있는 活動이요, 力量
發揮이요, 團結合心이요, 發言行動이요,
誠實性뿐이 될 것이다. 建築設計란 이 社
會에 얼마나 險難하다는 것을 새삼 사무
치게 痛感된다.

發揮이요, 團結合心이요, 發言行動이요, 誠實性뿐
이 될 것이다. 建築設計란 이 社會에 얼마나 險難
하다는 것을 새삼 사무치게 通感된다.

(新進建築研究所 代表)